

수해 피해 가게·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

- 수해 피해 가게·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
-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

8.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8.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‘주의’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고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다.

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를 입은 가게·중소기업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,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.

수해 피해 가게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,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,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,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,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,

수해 피해 소상공인·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,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,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.

아울러,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,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.

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,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방안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.

[별첨] 수해 피해 가게·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박재훈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남지윤 (02-2100-2864)
		담당자	주무관	박다혁 (02-2100-2867)
<공동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신장수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윤아 (02-2100-2953)
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이동엽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이영민 (02-2100-2961)
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박진애 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오지윤 (02-2100-2992)
			사무관	정형준 (02-2100-2993)
	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	책임자	팀 장	안남기 (02-2100-1660)
		담당자	사무관	임재원 (02-2100-1661)
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	책임자	과 장	오유정 (02-2100-2610)
		담당자	사무관	목정민 (02-2100-2613)
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	책임자	과 장	박정원 (02-2100-29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유란 (02-2100-2922)
	금융감독원 감독혁신국	책임자	국 장	최정환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최범전 (02-3145-8001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정은정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이종진 (02-3145-8022)
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권홍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유명신 (02-3145-7450)
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조영범 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김석원 (02-3145-7447)
	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건필 (02-3145-6770)
		담당자	팀 장	이장희 (02-3145-6772)
	은행연합회	책임자	본부장	박영상 (02-3705-5070)
		담당자	부 장	이종혁 (02-3705-5339)
			부 장	박신형 (02-3705-5290)
	생명보험협회	책임자	본부장	천승환 (02-2262-6697)
		담당자	부 장	유제상 (02-2262-6624)
	손해보험협회	책임자	본부장	김지훈 (02-3702-8524)
		담당자	부 장	방병호 (02-3702-8530)
	저축은행중앙회	책임자	본부장	김생빈 (02-397-8603)
		담당자	부 장	백운석 (02-397-8610)
	여신금융협회	책임자	본부장	김민기 (02-2011-0711)
		담당자	부 장	오승환 (02-2011-0723)
	신협중앙회	책임자	본부장	강형민 (042-720-1850)
		담당자	팀 장	박재운 (042-720-1851)
	농협중앙회	책임자	본부장	이재순 (02-2080-5056)
		담당자	팀 장	임현정 (02-2080-3161)
			팀 장	이은중 (02-2080-3122)
	수협중앙회	책임자	본부장	이현종 (02-2240-2260)
		담당자	팀 장	오상우 (02-2240-2102)
	산림조합중앙회	책임자	부 장	강경용 (02-3434-7230)
		담당자	팀 장	한윤혁 (02-3434-7231)
	새마을금고중앙회	책임자	부문장	윤경석 (02-2145-9120)
		담당자	부 장	이준엽 (02-2145-9481)

1 지원 내용

가. 수해 피해 가게 금융지원

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

- 금융권*(은행 · 상호금융권 등)은 수해 피해를 입은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.

- * ① 은행 ·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
-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(금리·한도 등)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· 중앙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< 은행권·상호금융업권(예시) >

- 신한·우리·국민·아이엠부산·경남은행 : 피해 개인고객 대상(최대 2천만원)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
- 하나은행 :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(최대 5천만원) 지원 등
- 농협은행 :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(피해액 범위내 최대 1억원) 지원 등
- 기업은행 :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(최대 3천만원) 지원 등
- 농협 :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(세대당 최대 3천만원) 지원
- 수협 :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(인당 최대 2천만원) 지원
- 새마을금고 :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활자금(인당 최대 1천만원) 지원

2 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 등 지원

- 금융권*(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, 보험사, 카드사)은 수해 피해 가게에 대해 일정 기간(3개월~1년) 대출원금 만기연장, 상환유예,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.

- * 만기연장 · 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· 중앙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< 은행권(예시) >

- 국민은행 : 만기연장 지원(최고 1.5%p내 우대금리 제공) 및 연체이자 면제*
*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납입 限
- 신한은행 : 만기연장 지원(최고 1.5%p내 우대금리 제공) 및 연체이자 면제
- 우리·하나·경남은행 : 만기연장(최대 1년), 금리우대(최고 1.0%p), 상환유예 지원 등
- 농협은행 : 만기연장,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(최대 12개월)
- 기업은행 : 만기연장(최대1년), 상환유예(최대 6개월) 지원 등

- 부산은행 : 만기연장(최대 1년), 상환유예 지원 등
- 카카오뱅크 : 신용대출 만기연장, 분할상환유예
- 토스뱅크 : 기존대출 상환유예

< 카드사(예시) >

- 쏘카드사 : 최대 6개월 청구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% 할인
- 삼성카드 : 일시불→분할납부 전환(분할납부이자 감면), 카드론 만기 연장
- 신한카드 : 청구유예 후 6개월 분환상환 지원

< 상호금융업권(예시) >

- 농협 : 원리금 상환유예(최대 12개월) 지원 등
- 신협 :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(최대 6개월) 지원 등
- 수협 : 분할상환원금 또는 이자일부 상환유예(만기이내) 및 만기연장 지원 등
- 산림조합 :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(최대 6개월) 지원 등
- 새마을금고 : 원리금 상환유예(최대 6개월) 및 만기연장(최대 12개월) 지원 등

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

- 생보·손보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.
 - *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% 범위 내 조기지급
-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합니다.
 - *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,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-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,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.

※ 보장대상 주요 유형

-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
- 태풍,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
-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

☞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·손보협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

-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
 - *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, IBK기업, iM뱅크, BNK부산, BNK경남, BC바로카드

-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(삼성, 신한),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(우리, 현대, KB국민), 연체금액 추심유예(롯데, 우리, 하나, 현대) 및 분할상환(롯데, 하나)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.

*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,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
☞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5 재난지역 피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(특별재난지역 적용)

- 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연체 발생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*할 수 있으며, 무이자 상환유예(최대 1년) 및 채무감면 우대(70% 고정**)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* 일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우려자만 신속채무조정 가능

** 장기연체(예: 1년 이상 연체)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

나. 수해 피해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금융지원

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
- 정책금융기관(산은·기은) 및 은행권·상호금융권* 등은 피해기업·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·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.

* ① 은행·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

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(금리, 한도 등)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
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·중앙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- 신용보증기금·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·소상공인 및 재해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.

<주요 지원프로그램(예시)>

- 산은·기은 : 긴급운영자금 지원(기은 : 기업당 3억이내, 산은 : 기업당 한도이내)
- 신보 : 중소·중견 특례보증 지원(보증비율 90%, 고정 보증료율 0.1~0.5%, 보증한도 최대 5억원)
- 농신보 : 특례보증 지원(보증비율 85→100%, 보증한도 5억원)
- 국민·신한·우리·하나·부산·경남·아이엠 : 피해상인 대상 긴급운영자금(최대 5억원) 및 특별우대금리 제공

②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

- 정책금융기관(산은·수은·기은) 및 은행권·저축은행권·상호금융권* 등은 피해기업·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,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.

* 만기연장·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
☞ 상세 내용은 **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·중앙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**

- 신용보증기금·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·소상공인·재해 농어업인 등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.

③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

- 금번 수해 등으로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,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*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* 20.4월 ~ '25.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(90일 이상)에 빠졌거나,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대상

2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 운영

-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**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**을 구성하고,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.

- 금감원 각 지원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,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,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(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)입니다.

- 특히,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필요시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.

-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, 금융업권협회,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,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< 금융감독원,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>

금융감독원			
종합지원센터	☎ 1332	강릉	☎ 033-642-1904
부산 울산	☎ 051-606-1700,1701	경남	☎ 055-716-2330
대구 경북	☎ 053-760-4000	제주	☎ 064-746-4200
광주 전남	☎ 062-606-1600	전북	☎ 063-250-5000
대전·세종·충남	☎ 042-479-5151,5154	강원	☎ 033-250-2800
인천	☎ 032-715-4890	충북	☎ 043-857-9104
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			
산업은행	☎ 1588-1500	은행연합회	☎ 02-3705-5000
기업은행	☎ 1566-2566	생명보험협회	☎ 02-2262-6600
수출입은행	☎ 02-3779-6259	손해보험협회	☎ 02-3702-8500
신용보증기금	☎ 1588-6565	저축은행중앙회	☎ 02-397-8600
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	☎ 02-2080-6607	여신금융협회	☎ 02-2011-0700
농협중앙회	☎ 1661-2100	수협중앙회	☎ 1588-1515
신협중앙회	☎ 1566-6000	산림조합중앙회	☎ 1544-4200
새출발기금	☎ 1660-1378	새마을금고중앙회	☎ 1599-9000
신용회복위원회	☎ 1600-5500		

3 유의사항

- ①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*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.
 - * [발급방법]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(주민센터, 읍·면사무소 등) →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→ 지자체 확인서 발급
 - ② 온라인 접수(국민재난안전포털 www.safekorea.go.kr) → 지자체 확인서 발급
- ②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 -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③ 최근 정부,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(URL)을 클릭하도록 하는 **보이스피싱(스팸)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**합니다.
 -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**먼저 전화나 문자,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.**
 -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**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**하고,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**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**해야 합니다.